

군서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군서면
- 감사기간 : 2018. 03. 06. ~ 2018. 03. 09. (4일간)
- 대상기간 : 2016. 04. 26. ~ 2018. 03. 05. (2개년)
- 감사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1인이상 고용시 4대 사회보험 가입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의무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영산강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면서 12명에 대해 단기간 근로자라는 사유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 <p>【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p>
	민원 거부처분(반려)시 의의신청 미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면서 민원인에게 구제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통지한 사실이 있음 <p>【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p>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위반기간 착오계산 및 과태료 미감경 등으로 조○라 외 4인에 대하여 총 35,000원의 과태료를 과다부과하였으며, 최○기 외 3인에 대하여 총 92,000원의 과태료를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음 <p>【주민등록법 제16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p>
세출분야	이장 위해축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2018년 이장의 임기중 위해축시에 이장수당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지급일 당시의 이장에게 일괄 지급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5명의 이장에게 이장수당을 착오지급한 사실이 있음 <p>【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산불방지 비상근무 급식비 지급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봄철(4월)과 가을철(11월) 산불비상 근무에 따른 급식비를 지급하면서 산불비상 근무 명령을 받지 아니한 초과근무자 총 35명에게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급식비 24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2017년 4월에 지급된 2건 14,000원은 면사무소 기본경비에서 중복지급 되었고, 또한 급식비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방재정법 제 4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산림축산과-2454(2017.01.25.)】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지급시 입증서류 없이 출장신청서만을 근거로 관외여비를 지급하였으며, 교통비를 잘못 계상하여 실제 관외출장여비보다 56,800원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방재정법 제 47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농업분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검토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시 취득대상자가 농업경영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취득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농지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으로 처리함에도 2016년 15건, 2017년 26건에 대해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업경영계획서가 불필요함에도 첨부하여 발급 처리한 사실이 있음. 【농지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청 제7조】

분야별	제 목	주요 위반사항
농업분야	2017년도 가축통계조사 업무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통계조사는 농가별로 전수조사하여 축산 행정 및 가축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2017년 상하반기 가축통계조사시 이장 및 마을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조사내용, 조사자 날인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군에 보고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산림축산과-25022(2015.11.17.) 및 11991(2016.05.26.)】</p>
	산불예방 진화장비 사후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한 산불 위험지역 순찰 및 예방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시에는 초동 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진화장비 보관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정비, 보관하여야 함에도 장비사전 점검 및 보관창고 환경(청소, 구분적재)등에 미흡하여 산불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능력 및 산불예방 업무추진에 소홀히 함 <p>【신림보호법 제29조 및 산림축산과-715(2018.01.09.)】</p>
세무분야	취득세(건축물) 과세자료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에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9건 5,778,680원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p>【지방세법 제20조】</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무분야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미신고 납부한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13건, 1,157,9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p>【재무과-18006(2017.7.7.)호, 20110(2017.7.28.)】</p>
	이륜차 사용신고 수입인지 미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인지세법 제3조제1항4호의 규제에 의거 3,000원의 수입인지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2017년 총 5건에 대하여 15,000원의 수입인지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p>【인지세법 제3조제1항4호】</p>
사회복지 분야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절차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급여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에도, 2016년 3가구, 2017년 2가구에 대한 상,하반기 급여 관리 점검시 급여관리자가 제출한 명세서만을 근거로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고, 특히 손○옥(지적장애2급)의 급여관리인 손○자(동생)에 대하여 지출상태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함에도 어떠한 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p>【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 분야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서면에서는 상기 『군서 모정들 농로포장 공사』 외 1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 관리비는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반영하였으나 준공하면서 환경관리비 정산 내역을 소홀히 확인하고 준공처리 되었다. 결국 발주부서에는 준공 전 보험금 정산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하나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하여 총 금액 112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였음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서면에서는 『군서 주암배수로 정비공사』 외 3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개 현장 이상에 중복배치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서면에서는 『군서 검주리 간척지 농로포장 공사』 외 1개소 사업을 준공하면서 본 설계 내역에 코아채취 1조를 반영하였으나 미시공한 채로 준공처리 되었음. 이에 공사 감독은 준공 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 249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